
입 법 정 보

2019-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5
4.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법무부).....	6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6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7
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7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8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8
1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4
1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5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5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6
2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7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7
2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8
2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2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20
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1
27.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21
2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2
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2
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3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4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6
3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35.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7
3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8
3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9
3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0
4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해양수산부).....	31
4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3
4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3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6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37
4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
4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정부입법 예고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3. 11.

○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 (안 제3조, 제46조, 제27조의3)

- 1)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직류 신설 및 시험과목 선택의 자율성 부여
- 2) 기초단체 국외훈련 파견시, 시·도지사 별도정원 승인절차 폐지

나. 인사운영의 책임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안 제3조의5, 제7조, 제10조의2, 제33조의2)

- 1) 인사운영 현황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근거 마련
- 2) 성별, 장애 유무 등의 이유로 보직관리시 차별금지 근거 마련
- 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35시간까지)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다. 공무원 역량 향상 및 지자체 생산성 제고(안 제3조의3, 제46조, 제50조, 제55조의3, 제65조)

- 1) 7급 공채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자격증 가산 정비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무원 공개 채용제도 개편 ('21년 시행)
- 2) 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책임성 있는 인력양성기반 마련

2.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3. 11.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6157호, 2018. 12. 31.공포, 2019. 4. 1.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

활용목적은 명확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부령에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삭제하고 부령에서 예외 규정만 위임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 개정)
-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집정보는 모든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에 활용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로, 낚시어선의 경우, 어업 외 영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함(제41조의2제3항 개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3. 11.

-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해교육 지원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2항의 신설(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기관 선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다가센터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안 제12조의2제3항 개정)

4.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3. 11.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3. 11.
-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 1) 컴퓨터 등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스포츠 경기의 관람, 중계 등 부대활동을 위한 영사막, 비디오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스포츠시설로 정함
 - 2)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항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스포츠 경기 관련 개최 실적, 접근성, 시설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권한을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그 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절차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3. 11.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비배분비용·수익 정의의 단순화 및 일원화하여 원가구분을 명확하기 하고,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1)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제11조제2항 삭제

나.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1)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 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2. 7.

○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5740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 중 열차 출입문의 위치와 승강장안전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승강장에는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안 제43조 신설)

1)-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고상 승강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가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3. 11.

○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기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도모하려는 것임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 28.
- 마감일자 : 2019. 2. 7.

○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삭제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 2188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통령령 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삭제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이 영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29. • 마감일자 : 2019. 3. 1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2019. 4. 16. 시행)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규정(안 별표 4)

-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규모와 필수설비를 정함

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방식 규정(안 별표 4)

-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원활히 하도록 해당 시설을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한 경우는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규정(안 별표 4)

- 1)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정함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9.

• 마감일자 : 2019. 3. 11.

○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행위 허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치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구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확대(안 별표 1 제1호마목·제3호바목)

1) 개발제한구역에서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을 1,000㎡에서 2,000㎡로 확대

나. 서바이벌 게임시설의 설치자격, 원상복구 등 마련(안 별표 1 제1호러목)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서바이벌 게임관련 시설’의 설치주체, 설치장소, 원상복구 등을 규정

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 허용(안 별표 1 제1호버목 신설)

1)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에 필요한 에 필요한 실습교육장,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허용

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허가요건 정비(안 별표 1 제3호)

1) 허가요건을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하는 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

마.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주체 및 요건 마련(안 별표 1 제3호라목)

1)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바. 장사관련 시설 중 ‘경내’의 범위 및 정의규정 마련(안 별표 1 제3호타목)

- 1) 사찰의 경내는 ‘토지의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사찰의 경내지는 ‘전통사찰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지’ *로 정비

사. 야영장의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 명시(안 별표 1 제5호사목)

- 1)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영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규정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 29.
- 마감일자 : 2019. 3. 11.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17.1.13.) 및 시행('17.7.1.)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비고 2의 산업별 적용 방법도 일부 조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2)제조업의 바)중공업 1에 추가(안 [별표2] 비고 2. 가. 2) 바)

- 1) 산업분류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대분류인 ‘기계회 및 수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산출물, 완성품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중공업’ 1에 분류

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관련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안 [별표2] 비고 2. 가. 7))

- 1) 산업분류상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이었으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으로 변경
- 다. 7) 가) 중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을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으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을
 “사업시설 관리, 조정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으로,
 7) 나)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을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으로 변경 (안 [별표2] 비고 2.
 가. 7) 가) 나))
-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사성 등을 고
 려하여 7)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에 추가하고, 명칭을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으로 변경
 -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 ‘사업시설관리, 사
 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으로 1변경됨에 따라 7) 나)에 ‘임대
 서비스업’ 추가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 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 30. ● 마감일자 : 2019. 3. 11.
-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도
 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3호,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동일한 내용은 삭제함(제2조의3제5항 단서 삭제)
 - 나. ‘시 도지사’ 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
 상의 대도시시장이 시 도지사의 업무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시 도
 지사’ 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11조의9)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30. • 마감일자 : 2019. 3. 1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12.11, '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중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안 제28조 신설)
 - 다. 위기가구 정보연계 및 발굴 범위 확대 등(별표 1 제28호, 별표 2 제1호 가목·라목, 제2호 바목, 제4호 다목, 제5호 라목·마목)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30. • 마감일자 : 2019. 3. 1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12.11, '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기가구에 대한 분기별 발굴조사 및 발굴체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의3 신설)
 - 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1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 30.

• 마감일자 : 2019. 3. 11.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24. 법률 제16068호)됨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1) 안건의 보고는 그 안건을 발의한 자가 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1)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4조)

1) 분과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안 제15조)

1)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

1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 30. • 마감일자 : 2019. 3. 11.
- 사료검사 관련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료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8.10.30. 공포, ' 19.5.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권한의 위임·위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으로 개정
 - 1)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및 변경 관련 사항과 별지 서식(안 제22조, 제31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2) 사료검사에 대한 사항, 사료검사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 3)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재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30조, 제32조)
 - 나. 사료검정인정기관 관련 관계 장부를 명확히하고 업무 처리 기한을 실 소요기간으로 개선(안 별표 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1. 30. • 마감일자 : 2019. 3. 11.
- ‘자본시장 혁신과제’ ('18.11월)의 후속조치로 개인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규모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문투자자 지정 근거 신설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

1)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동 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개인은 거래상대방과 무관하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한 개인은 자신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문투자자의 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완화(안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

1)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일평균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되, 잔고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 마련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

1) 자산 규모의 전문투자자 요건 해당여부를 투자자가 소속된 가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를 신설함.

라.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지정 등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안 제68조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1)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면으로 지정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투자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투자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투자자임을 알면서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행위,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권유하는 행위를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

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 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의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안 제13조의2 제2항)

- 1)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초기창업자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등 관련사업에 출자해야 하는 재산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으로 규정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안 제20조 제1항)

- 1)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 총액 기준을 “5천만원” 으로 규정

2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2.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안 제2조의3)

-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18. 2. 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권장품질

표시가 도입되어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신청범위, 평가기준 개선 등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 규정(안 제7조의2)

1) 권장품질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규격의 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규정

나. 검사·검정기관 지정 신청범위 및 평가항목 개선(안 제98조, 제130조)

1) 검사·검정기관 지정을 항목별로 신청토록 하고, 세부절차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하며, 검정기관 신청항목에 병원성미생물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에 품질관리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다. 농산물검사원 지정 등의 근거규정 마련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안 제104조)

1) 농산물검사원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과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서, 관리대장 신설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라.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5)

1) 생산자 표시란에 등록단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2.

○ 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 강화, 경년항공기 및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ICAO 국제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한편,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시험을 5등급 이하와 6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방식도 현행 면접관과 인터

류 시험방식에서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Computer Based Test)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안전장에 보고시기 합리화 및 일부 보고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2.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 종류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안 제21조제 1항제10호)

2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3.
-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구성 운용 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 운용 규제 완화 (제53조제1항)
 - 1)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

- 나. 허가조건 이행점검 업무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제68조제1항)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대상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실적 점검 및 이에 따른 처분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3.
-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 정의 확대 (안 제2조)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정의 추가
- 나. 등록 절차·요건·취소 등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18조)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등 등록 요건 및 등록 취소 요건 명시
- 다. 사회적기업 활동 평가 및 지원근거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라. 경영지원 주체 확대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마. 등록제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대상 명시 (안 제12조)
- 등록제에 따라 안 제9조의2의 평가를 거친 사회적기업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바. 재정지원 사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현실화 (안 제14조)
- 현재 전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정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으로 현실화

- 사.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의무(안 제14조의2 신설)
 - 재정지원(인건비·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정수급 등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 아. 사업보고서 제출 간소화 (안 제17조)
 -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사업 및 공공구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참여 의무화
- 자.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 (안 제21조)
 - 등록에 관한 제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를 조정
- 차. 부처 및 지자체 간 정책 협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1조의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 31. • 마감일자 : 2019. 3. 12.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시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7.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2. 1. • 마감일자 : 2019. 3. 13.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

○ 주요내용

가.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1) 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심사단계 방법 등은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으로 하여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이 아닌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 2)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1) 대학의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 2)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3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2. 1.
- 마감일자 : 2019. 3. 13.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장치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별도로 신설·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소방시설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설치 및 작동 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4)
- 나.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를 신설함(안 별표6)
-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4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2. 7.
- 마감일자 : 2019. 3. 19.

○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해양공간의 범위(안 제4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해양공간 범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외에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추가하여 규정함.

나.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미확정인 해역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간 협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 1)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등(안 제13조, 제14조, 별표 1)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에 타 법률에 따라 계획이 승인·수립·변경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필요한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함.

마.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등(안 제16조, 제17조)

- 1)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한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성협의 내용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

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안 제19조의2 제3항, 제30조, 제45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5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 별표23)

- 1)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제조업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분류
- 2) 민간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가능지역 및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
- 3) 특·광역시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광역지자체에서 입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을 위한 진입도로(50미터 이하인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안 제2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 1) 공업지역에도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의 방화지구 지정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
- 2) 비도시지역에서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면제대상에서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 1) 세부시설 면적·건축물 용적률·건축물 높이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1조제2항)

- 1) 성토재로서 재활용 골재 범위는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지

자체가 농지 개량으로서 성·절토 가능 범위를 2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안 제113조의3)

1)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방법을
확대, 열람 외 사본 제공도 허용

바.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개선(안 제33조제1항)

1)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취지에 맞게 세분된 용도지역으로 보
도록 이미 법령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문 개정

사.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25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 제56의3제5항)

1) 다른 호와 저축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재분류하여 명확히 구분

아.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의 용도변경 제한
관련(안 제57조제2항)

1) 심의제외 시설로 개발행위 완료 후 심의대상 시설로 용도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2. 7.

● 마감일자 : 2019. 3. 20.

○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
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
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
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2)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
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 명확화(안 제16조)
- 1)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대상여부 판단시 용도변경에 대한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 다.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3조, 제16조)
- 1)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
-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중소기업 창업자 여부’ 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 1)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조업소 등을 설치(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서식 보완

4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2. 7.
 - 마감일자 : 2019. 3. 20.
-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확대(안 제31조 제4호)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자동차정류장_공동차고지)에 추가·신설
 - 나.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 규제완화 (제57조제4호)
 - 1)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에도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원지 설치 수용
 - 다. 옥내 변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확대(제67조제2호)
 -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할 수 있

도록 현행 제한규정 삭제

라. 전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제97조제3호)

- 1) 조례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에도 설치 가능토록 확대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2. 7.

• 마감일자 : 2019. 3. 19.

-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안 제11조제5항, 별표1 개정)

- 1)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음)

- 2) 혁신도시·행복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

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2. 8.

• 마감일자 : 2019. 3. 20.

-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25호,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점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 마련(안 제2조의5 제4항, 제5항 신설)

4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2. 8. ● 마감일자 : 2019. 3. 25.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공사업 상속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 나.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공사업 상속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라. 공사업 상속 관련 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명시(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 마. 공사실적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의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1호가목)
 - 바. 조합의 사업 범위를 명시(안 제47조의2 신설)
 - 사. 공사업 상속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의 권한 위탁을 명시(안 제53조제2항제1호의4)
 - 아. 공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명시(안 별표9)
 - 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시(안 별표10)

4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2. 8.
- 마감일자 : 2019. 3. 25.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관련 서식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1)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신고서 서식을 정함